



서울시설공단



국민대학교
행정대학원

산학협력 협약서

서울시설공단,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산학 협력 교육을 통하여 공공 전문 행정인 양성과 각 기관 및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서울시설공단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간의 교육과 연구, 정책기획 및 집행, 주민현안해결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약사항)

- ①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서울시설공단 소속 임직원이 '주민자치전공' 석사학위과정에 입학 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사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료의 30~50%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- ②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서울시설공단 소속 임직원이 '주민자치전공' 외 타 전공(행정학, 정책학, 감사학, 미술관·박물관학, 사회복지학) 석사학위과정에 입학 시 수업료의 최대 30%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- ③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을 자문하고 지원한다.
- ④ 기타 기관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

제3조 (교육사업)

- ① 서울시설공단 소속 임직원 중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입학전형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선발된다.

- ②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서울시설공단 소속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석사학위 과정 전문교육을 제공한다.
- ③ 서울시설공단,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은 본 협약에 따른 과정운영에 있어 필요시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연구사업)

- ① 서울시설공단,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한 기획과 과제수행을 함께 실행할 수 있다.
- ② 서울시설공단 소속 임직원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진은 상호 연구 능력 활성화를 위해 공동세미나,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 (교류, 협력사업) 서울시설공단,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은 교육사업과 연구사업 이외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.

- ① 인적·물적 자원 및 학술정보 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.
- ② 국가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.

제6조 (협약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 (협약의 해제·해지)

- ① 서울시설공단,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여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.
 1.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
 2. 일방 당사자가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 3.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 (비밀유지)

- ① 서울시설공단,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. 이는 협약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.
-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
제9조 (기타 사항)

- ①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서울시설공단,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이 협의하여 정한다.
- ② 본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서명(날인)한 후 서울시설공단,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7월 17일



서울시설공단

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

이사장 한



국민대학교
행정대학원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

원장 하 현

